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5 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김홍걸·강득구·강훈식

김경만 • 김경협 • 김용민

도종환 • 민형배 • 박성준

소병철 • 이상민 • 이해식

정필모 · 조승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"대책"이란 용어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, 재난대책본부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·사고에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"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"의 명칭을 "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위원회"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등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"대책협의회"를 "사회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"대책협의회"를 "사회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"대책협의회"를 "사회통합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책협의회"를 "사회통합위원회"로,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및 제4항 중 "협의회"를 각각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17조의2제2항 중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22조의2제3항 단서 중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후단 중 "협의회"를 "통합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한 행위는 북한이탈주민 사 회통합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	
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	①		
북한이탈주민 <u>대책협의회</u> 의 심	사회통합위원회		
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			
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			
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			
3년마다 수립・시행하여야 한			
다.	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보호기준 등) ①・② (생	제5조(보호기준 등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	3		
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			
내로 하고, 거주지에서 보호하			
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			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			
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<u>대</u>	<u>사</u>		
<u>책협의회</u> 의 심의를 거쳐 그 기	회통합위원회		
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			
다.			
제6조(북한이탈주민 <u>대책협의회</u>)	제6조(북한이탈주민 <u>사회통합위</u>		
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	원회) ①		
을 협의·조정하고 보호대상자			

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 다)를 둔다.

- 1. ~ 6. (생략)
- ② <u>협의회</u>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협의회</u>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보호 결정 등) ① 통일부장 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보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.

<u>사회통합위원회</u> <u>통</u>
합위원회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통합위원회
<u>_</u>
③
<u>통합위원회</u>
4
<u>통합위원회</u>
<u>.</u>
제8조(보호 결정 등) ①
<u>통합위원회</u>

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의2(취업보호의 제한) ① 제17조의2(취업보호의 제한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 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 -----통합위원회-----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 료할 수 있다.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제22조의2(거주지에서의 신변보 제22조의2(거주지에서의 신변보 호) ①・② (생 략) 호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, 신 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 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-----통합위원회-----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제27조(보호의 변경) ① 통일부장 | 제27조(보호의 변경) ① -----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 ----통합위원회-----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종료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2 ~	⑤ (생	략)	
제32조(이의신청	성) ① (생	략)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경우 미리 <u>협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∼ ⑤ (연행과 살음)
제32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
승)
②
·
<u>통합위원회</u>